

20-1.교원 해외여행 규정

제정일 : 2016년 04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과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교수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총장의 공무출장명령에 의한 해외여행 이외에 행하는 교원의 모든 해외여행에 적용된다.

제3조 (여행 허가) ① 교원이 공휴일 이외의 기간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교원은 여행개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법인사무처에 제출한다. 법인사무처는 해당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1. 여행허가신청서(여행의 종류, 목적, 기간, 행선지 등 명기)/본교 소정양식[별지1]
2. 해외여행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3. 보강계획서

③ 여행목적 이외의 일정은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여행 기간) ① 수업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기 당 통산 10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달리 할 수 있다.

② 방학기간 중 해외여행은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제5조 (여행 중의 의무) 해외여행 기간 중 교원은 본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허가제한) 수업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달리 할 수 있다.

1. 국제(학술)회의 단순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
2. 자료수집, 방문, 시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
3. 민간단체, 유관기업체의 지원에 의한 해외여행
4. 기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해외여행

제7조 (보강) 해외여행으로 인한 결강은 당해학기 중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8조 (위반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여행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6.4.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